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설명자료</b>		 
		배포일시	2020. 3. 18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명섭, 서기관 정용연, 사무관 최민석 • ☎ (044) 201-3320, 3324	
	주택정비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서기관 김종성, 사무관 이중곤 • ☎ (044) 201-3384, 3387	
보도일시		2020년 3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8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: 김현미)는 재개발·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→ 9개월로 3개월 연장('20.4.28까지→'20.7.28까지)한다고 밝혔다.
- 당초, '19.10.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·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(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) 중,
  - '20.4.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('19.10.29 공포·시행)에 경과조치를 두었다.
- 그러나,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,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,
  -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.
-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. \* 3.23일 입법예고 예정

-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,
  -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,
  - “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